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338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○ ○ ○ 공 소 청

제 0000-0000 호 0000. 00. 00.

수 신 : ○○○법원장 발 신 : ○○○공소청

제 목 : **몰수 · 부대보전청구** 검 사 (인)

아래 피의자(피고인)에 대한 피의(피고)사건에 관하여, 몰수 ·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를 청구합니다.

피의자 (피고인)		성명
		주민등록번호 (세)
		직업
		주거
죄명		
피의사실(공소사실)의 요지		
몰수 · 부대보전의 근거법령조항		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 제33조제1항 · 제2항, 제34조제1항,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몰수보전관계	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· 주소와,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 · 주소	
	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	
부대보전관계	몰수 · 보전사건의 표시	지방법원 년 제 호
	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· 주소	
	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	
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		판 사 (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